

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	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			
	2020. 1. 31. / (총 4매)			
배 포 일				
생물안전평가과	과 장	신 행 섭	전 화	043-719-8041
	담 당 자	오 경 환		043-719-8044
감염병진단관리과	과 장	이 상 원	전 화	043-719-7840
	담 당 자	김 갑 정		043-719-7848

## “신종 코로나바이러스(2019-nCoV)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 기준(Interim Guide)” 안내

- 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(2019-nCoV) 감염증 발생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체를 취급하는 진단 검사 및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 기준을 마련
- ◇ 실험실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(2019-nCoV)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생물안전 사항과 위해 수준에 따른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 기준을 제시

-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(2019-nCoV) 감염증이 발생함에 따라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체 또는 바이러스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일반적인 생물안전 기준과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.
  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병원성 잠재력 및 전파 역학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, 모든 검체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하고 감염성물질 취급 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.
- 이에 따라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모든 실험실에서는 다음의 생물안전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.

- 호흡보호구, 눈보호구, 가운,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.
  -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생물안전작업대(Class II 이상) 내에서 수행한다.
  -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.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(2019-nCoV)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 시 생물안전 세부 기준은 작업별 위해 수준에 따라 적용합니다.
- 검체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 (Biosafety Level 2, BL2) 수준의 실험실에서 생물안전작업대(Biosafety Cabinet, Class II 이상)에서 수행합니다.
  - 불활화된 검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(Biosafety Level 2, BL2) 수준의 실험실에서 수행합니다.
  -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(Biosafety Level 3, BL3)에서 수행합니다.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진단·시험 검사를 수행하는 실험실에서는 작업 시 필요한 생물안전 세부기준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별첨> 신종 코로나바이러스(2019-nCoV)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 기준(Interim Guide)